

##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

제정 2005년 12월 28일 조례 제 862호  
전부개정 2016년 9월 29일 조례 제1519호  
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0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.
2. “준비단계”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·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,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.
  - 가. 상시대비단계: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
  - 나. 사전대비단계: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·대설 예보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“비상단계”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.
  - 가.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
  - 나.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·대응 및 복구(이하 “수습”이라 한다)를

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운영하는 단계

다.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·호우·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라.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

4. “자연재난대책기간”이란 자연재난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.

가. 여름철의 경우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
나. 겨울철의 경우: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

5. “사회재난대책기간”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
6. “예방”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,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7. “대비”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·훈련, 매뉴얼 정비,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8. “대응”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, 응급조치, 긴급구조, 상황관리, 기관간의 협조·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9. “복구”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·시행,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,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10.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오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유관기관을 말한다.

##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

**제3조(대책본부의 기능)**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총괄·조정
2.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
3.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
4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·재정상 조치요구
5.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발령
6.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
7.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
8.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대책본부 구성 등)** ① 대책본부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.

- 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,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차장은 부시장인 되며, 본부장을 보좌한다.
- 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·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.
- ⑤ 담당관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,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.
- ⑥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·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.
- ⑦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.
- ⑧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(이하 “재난안전상황실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.

**제5조(직무대행)**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, 통제관,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

**제6조(대책본부의 운영기간)**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연재난대책기간
2. 사회재난대책기간
3.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**제7조(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)**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준비단계: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2. 비상단계

가. 자연재난: 비상단계는 1, 2,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,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4와 같다.

나. 사회재난: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,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.

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

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상황판단회의)**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
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(이하 “상황판단회의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
2.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
3. 재난상황의 심각성, 전개속도, 지속기간, 파급효과,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
4.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·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.

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.

1. 재난안전상황실장
2.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
3.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
4.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9조(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)** ① 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,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할 수 있다.

**제10조(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)**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.
-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.

**제11조(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)**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·운영

**제12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·운영 등)**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확정한다.

1.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  2.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
  3.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
  4.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
  5.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·소장 및 부서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-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.
-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

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.

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,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.

⑦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3조(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)**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·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 기관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,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(이하 “실무회의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회의는 통제관, 담당관,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·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,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15조(기록 등)**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)**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

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
③ 본부장은 피해 지원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「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.

**제17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**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,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

**제18조(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)**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.

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,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
2. 구조·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
3.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
4. 시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

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,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

**제19조(본부장의 지휘 등)**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
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20조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**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·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·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라 예보·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
2. 기상상황, 홍수정보, 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
3.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
4.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

**제21조(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)**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

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**제22조(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구축)**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오산시 긴급구조통제단장(오산소방서장)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23조(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)**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, 대한적십자사·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

③ 본부장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·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.

**제24조(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)**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·예비군·공무원·경찰·소방공무원·민방위대원 등의 인력과 건설기계,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

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,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**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각 본부장 또는 경기도 본부장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방법 등은 「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를 준용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26조(재난상황 홍보 등)** 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**제27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**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.

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사무의 전결사항)**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.  
② 전결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오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 <2016. 9. 29 조례 제1519호 전부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

##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통합지휘소(이하 “통합지휘소”)”를 “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)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”을 “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)”을 “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제4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)”로 하고, 제5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계획 통보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계획 통보)”로 하고, 제8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, “통합지휘소의 위치, 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의 위치, 통합지원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의 위치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의 위치)”로 하고, 제14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 철수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철수)”로 하고, 제23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, “통합지휘가”를 “통합지원이”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**부칙** <2017. 4. 3 조례 제156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⑳ 까지 생략

㉑ 「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의 “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” 중 “문화체육과”를 “문화체육관광과”로 하고, “지역경제과”를 “일자리경제과”로 한다..

[별표 3]의 “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” 중 “안전도시국장”을 “미래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4]의 “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”, [별표 5]의 “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”, [별표 6]의 “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”, [별표 7]의 “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” 중 “지역경제과”를 “일자리경제과”로 하고, “공보관”을 “홍보감사관”으로 한다.

㉒ 부터 ㉔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8. 2. 9 조례 제164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의 “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” 중 “일자리경제과”를 “지역경제과”로 한다.

[별표 4]의 “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”, [별표 5]의 “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”, [별표 6]의 “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”, [별표 7]의 “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” 중 “일자리경제과”를 “지역경제과”로 한다.

⑦ 및 ⑧ 생략

**부칙** <2018. 12. 26 조례 제16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
⑭ 「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3]의 “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” 중 “미래도시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“안전총괄과장”을 “안전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4]의 “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” 중 “홍보감사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하며, “건설도로과”를 “도로과”로 하고, “안전총괄과”를 “안전정책과”로 한다.

[별표 5]의 “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” 중 “홍보감사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하며, “건설도로과”를 “도로과”로 하며, “안전총괄과”를 “안전정책과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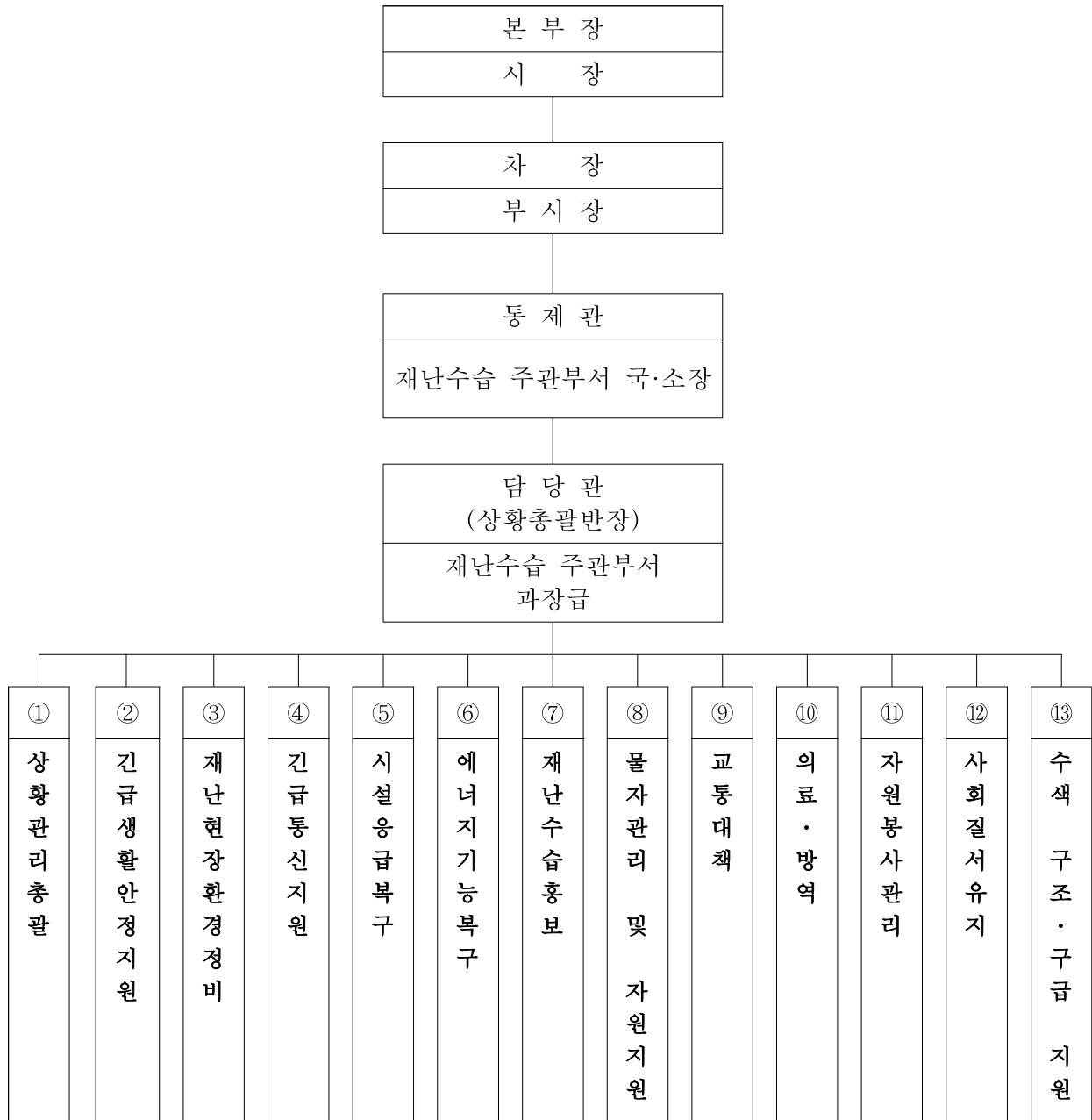
[별표 6]의 “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” 중 “홍보감사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하며, “건설도로과”를 “도로과”로 하고, “안전총괄과”를 “안전정책과”로 한다.

[별표 7]의 “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” 중 “홍보감사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하며, “안전총괄과”를 “안전정책과”로 한다.

⑮ 부터 ㉓ 까지 생략

[별표 1]

##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(제4조제1항관련)



[별표 2] <개정 2018. 2. 9>

##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(제4조 제8항 관련)

| 재난관리주관기관 |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수습<br>주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부      |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생교육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래창조과학부  | 1. 우주전파 재난<br>2. 정보통신 사고<br>3.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혼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<br>정보통신과<br>정보통신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교부      |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치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무부      |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방부      |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총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화체육관광부  |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체육관광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림축산식품부  | 1. 가축 질병<br>2. 저수지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식품위생과<br>농식품위생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업통상자원부  | 1.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<br>2. 원유수급 사고<br>3. 원자력안전 사고(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)<br>4. 전력 사고<br>5.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경제과<br>-<br>-<br>지역경제과<br>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건복지부    | 1. 감염병 재난<br>2. 보건의료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강증진과<br>보건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환경부      | 1.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<br>2. 식용수(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<br>3.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<br>4.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<br>5. 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과<br>수도과<br>환경과<br>-<br>안전총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용노동부    |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토교통부    | 1.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<br>2. 고속철도 사고<br>3.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<br>4. 도로터널 사고<br>5. 식용수(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) 사고<br>6. 육상화물운송 사고<br>7. 지하철 사고<br>8. 항공기 사고<br>9.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| 건설도로과<br>교통과<br>-<br>건설도로과<br>수도과<br>교통과<br>교통과<br>안전총괄과<br>- |



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

| 재난관리주관기관 |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수습<br>주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부    | 1. 조류 대발생(적조에 한정한다)<br>2. 조수(潮水)<br>3.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<br>4. 해양 선박 사고<br>5. 해양어선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<br>-<br>-<br>-<br>-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안전처    | 1. 공동구(共同溝) 재난(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<br>공동구는 제외한다)<br>2. 정부중요시설 사고<br>3. 화재·위험물 사고,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<br>수난 사고<br>4.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<br>5. 풍수해(조수는 제외한다)·지진·화산·낙뢰·가뭄으로 인한<br>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<br>재난 및 사고<br>6.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<br>7. 시·동 청사 사고 | -<br>안전총괄과<br>-<br>안전총괄과<br>안전총괄과<br>-<br>회계과 |
| 금융위원회    |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자력안전위원회 | 1. 원자력안전 사고<br>2.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<br>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화재청     | 문화재 시설 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체육관광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림청      | 1. 산불<br>2. 산사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식품위생과<br>농식품위생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: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「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.

[별표 3] 〈개정 2018. 12. 26〉

##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(제7조제1항제1호 관련)

### □ 상시대비단계

1. 가동기준 : 평상시
2. 실무반 편성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통 제 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안전정책과장) |
| 실 무 반 | 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   |

비고 : 1.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.

2. 안전정책과장은 필요한 경우,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□ 사전대비단계

1. 가동기준 : 호우·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
2. 실무반 편성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통 제 관 | 안전행정국장             |
| 담 당 관 | 재난안전상황실장(안전정책과장)   |
| 실 무 반 | 재난안전상황실 및 12개 협업부서 |

비고 : 1.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안전총괄과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,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요청 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안전정책과장은 필요한 경우,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별표 4] &lt;개정 2018. 12. 26&gt;

**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**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## □ 비상 1단계

## 1. 가동기준

가. 호우·대설 : 주의보 발표 시

나. 태풍 : 예비특보 발표 시

2. 실무반 편성 : 5명+ $\alpha$ + $\beta$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통제관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부장,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부장, 차장,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무반 편성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인원                       | 총 5명+α+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5+α)       | 반장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정보·수집·분석 및<br>전파, 재난상황관리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안전정책과(1)<br>·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(1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보고서 작성<br>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안전정책과(1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관리총괄 및<br>상황분석 평가<br>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안전정책과(1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지원<br>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자치행정과(1)                      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<br>12개 협업기능(α) | 긴급생활안정지원(희망복지과 등), 재난현장환경정비(환경과),<br>긴급통신지원(정보통신과), 시설응급복구(도로과 등),<br>에너지기능복구(지역경제과 등), 재난수습홍보(홍보담당관),<br>물자관리 및 자원관리(안전정책과), 교통대책(교통과 등),<br>의료·방역(보건행정과 등), 자원봉사관리(자치행정과),<br>사회질서유지(화성동부경찰서), 수색·구조·구급(오산소방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<br>(β)          | 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

□ 비상 2단계

1. 가동기준

가. 호우·대설: 국지적 경보 발표 시

나. 태풍: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표 시,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

2. 실무반 편성: 7명+ $\alpha$ + $\beta$ (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통 제 관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부장,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부장, 차장,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무반 편성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인원                       | 총 7명+a+β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7+a)       | 반 장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정보·수집·분석 및<br>전파, 재난상황관리<br>(2) | - 안전정책과(2)<br>·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보고서 작성<br>(1)                   | - 안전정책과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관리총괄 및<br>상황분석 평가<br>(2)        | - 안전정책과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지원<br>(1)                       | - 자치행정과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<br>12개 협업기능(a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긴급생활안정지원(희망복지과 등), 재난현장환경정비(환경과),<br>긴급통신지원(정보통신과), 시설응급복구(도로과 등),<br>에너지기능복구(지역경제과 등), 재난수습홍보(홍보담당관),<br>물자관리 및 자원관리(안전정책과), 교통대책(교통과 등),<br>의료·방역(보건행정과 등), 자원봉사관리(자치행정과),<br>사회질서유지(화성동부경찰서),수색·구조·구급(오산소방서)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<br>(β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비상 3단계

1. 가동기준

가. 호우·대설: 호우·대설경보

나. 태풍: 광역적 태풍경보 발표 시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 시

2. 실무반 편성: 9명+α+β(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통 제 관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부장, 차장, 총괄지원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관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부장, 차장, 총괄지원관,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무반 편성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인원                       | 총 9명+α+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9+α)       | 반 장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정보·수집·분석 및<br>전파, 재난상황관리<br>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안전정책과(2)<br>·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(2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보고서 작성<br>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안전정책과(2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관리총괄 및<br>상황분석 평가<br>(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안전정책과(3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지원<br>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자치행정과(1)                      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<br>12개 협업기능(α) | 긴급생활안정지원(희망복지과 등), 재난현장환경정비(환경과), 긴급통신지원(정보통신과), 시설응급복구(도로과 등), 에너지기능복구(지역경제과 등), 재난수습홍보(홍보담당관),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(안전정책과), 교통대책(교통과 등), 의료·방역(보건행정과 등), 자원봉사관리(자치행정과), 사회질서유지(화성동부경찰서),수색·구조·구급(오산소방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<br>(β)          | 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

- 12개 협업별 실무반의 반원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본부장·차장·통제관 및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무반의 편성기준을 참조하여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·운영할 수 있다.
- 실무반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09:00부터 다음날 09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
- 비상단계별 가동기준은 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[별표 5] <개정 2018. 12. 26>

## 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○ 조직 및 담당업무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통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부장·차장 보좌,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부장·차장·총괄지원관 및 통제관 보좌, 실무업무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상<br>황<br>관<br>리<br>총<br>괄<br>반 | 재난정보·수집·분석<br>및 전파,<br>재난상황관리 | 1.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<br>2.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<br>3.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<br>4.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<br>5. 상황실 회의 준비,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<br>6.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<br>7.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·운영 | 안전정책과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| 1. 일일상황보고서 작성·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<br>2.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<br>3. 피해정보의 수집·보고<br>4. 인명피해 상황관리<br>5. 재산피해 상황관리<br>6.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<br>7.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서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. 펌프장 가동,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<br>정보 파악<br>9.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<br>10. TV 방송 모니터링<br>11. 민심동향, 미담사례 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정책과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관리 총괄 및<br>상황분석 평가          | 1. 대책본부회의 개최<br>2. 현장상황관리관 파견·관리<br>3.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·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정책과 |

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<br>황<br>관<br>리<br>총<br>괄<br>반 | 상황관리 총괄 및<br>상황분석 평가 | 4.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<br>5. 비상근무 단계 결정<br>6.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<br>7.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<br>8. 재난발생지역의 예·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<br>9.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·사전대피 등 추진<br>실태 관리<br>10.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              | 주관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지원                 | 1.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<br>2. 상황근무자 근무명령<br>3. 상황근무자 복무단속<br>4. 상황관리 행정지원 등<br>5. 상황근무자 식사·야식 등 후생·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치행정과<br>안전정책과                    |
| 긴급생활<br>안전지원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.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<br>2.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<br>3. 재해구호물자 확보·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<br>4.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<br>5.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<br>6.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<br>7. 사망·실종자 유족 대책, 응급생계구호 실시 | 희망복지과<br>안전정책과<br>노인장애인과<br>가족보육과 |
| 재난현장<br>환경정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.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<br>환경오염물질(재난폐기물, 위험물 등) 피해상황<br>및 처리실태·관리<br>2.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·<br>장비·자재 등 지원<br>3.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·운영지<br>도·확인<br>4.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긴급<br>통신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.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 상<br>황 파악<br>2.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<br>3.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<br>4. 각 부서 및 시·군 복구현황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통신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구 분            |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시설<br>응급복구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·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</li> <li>2. 공공·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</li> <li>3. 공공·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</li> <li>4. 각 부서 및 시·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실과       |
| 에너지<br>기능복구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(가스, 전기, 유류 등) 피해상황 파악</li> <li>2.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·긴급복구 상황 파악</li> <li>3.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·긴급복구를 위한 인력·장비·자재 등 지원</li> <li>4.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경제과      |
| 재난수습<br>홍보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</li> <li>2. 재난 예·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(TV·라디오·CATV·생방송 및 자막방송, KBS·재난방송 등)</li> <li>3.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</li> <li>4. 각종 보도자료 작성·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</li> <li>5. TV·라디오·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</li> <li>6. 중앙 및 도 공보담당관 관리</li> <li>7. 재난발생지역·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·송출</li> <li>8. SNS(Social Network Service)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·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</li> </ol> | 홍보담당관      |
| 물자관리 및<br>자원지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</li> <li>2.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,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</li> <li>3.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정책과      |
| 교통대책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</li> <li>2.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</li> <li>3.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</li> <li>4. 긴급수송 지원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통과<br>도로과 |

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

| 구 분             |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료·방역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발생지역 방역실시 현황 파악</li> <li>2.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·운영</li> <li>3.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</li> <li>4.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·운영 지도·확인</li> <li>5.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·위생관리 지도·확인</li> </ol> | 보건행정과<br>건강증진과       |
| 자원봉사<br>관리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도·확인</li> <li>2.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</li> <li>3.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치행정과<br>안전정책과       |
| 사회질서<br>유지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</li> <li>2.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</li> <li>3.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성동부<br>경찰서<br>안전정책과 |
| 수색,<br>구조·구급 지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난지역 수색, 구조 지원</li> <li>2. 재난지역 구급 지원</li> <li>3. 재난현장의 특성,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</li> <li>4.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</li> <li>5.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오산소방서<br>수도과<br>해당부서 |
| 유관기관            |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[별표 6] &lt;개정 2018. 12. 26&gt;

**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**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## 1. 가동기준

가.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

나.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

다.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

2. 실무반 편성: 8명+ $\alpha$ + $\beta$ (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통제관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부장,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본부장,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무반 편성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인원                       | 총 8명+a+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황관리<br>총괄반<br>(8+a명)      | 반장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정보·수집·분석<br>및 전파,<br>재난상황관리<br>(3) | - 재난수습 주관부서(2), 안전정책과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황보고서 작성<br>(3)                      | - 재난수습 주관부서(2), 안전정책과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지원<br>(1)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자치행정과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<br>12개 협업기능(a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긴급생활안정지원(희망복지과 등),<br>재난현장환경정비(환경과), 긴급통신지원(정보통신과),<br>시설응급복구(도로과 등), 에너지기능복구(지역경제과 등),<br>재난수습홍보(홍보담당관), 물자관리 및<br>자원관리(안전정책과), 교통대책(교통과 등),<br>의료·방역(보건행정과 등), 자원봉사관리(자치행정과),<br>사회질서유지(화성동부경찰서),<br>수색·구조·구급(오산소방서) |
|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<br>(β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비고: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·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별표 7] <개정 2018. 12. 26>

## 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(제7조 제1항 제2호 관련)

| 구 분         |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세부 기능                | 주요 업무와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황관리<br>총괄반 | 재난상황관리<br>1. 재난상황관리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의 예측 및 분석·전파, 예보·경보 발령</li> <li>○ 대책본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주관</li> <li>○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·처리</li> <li>○ 재난위험정보 수집, 분석, 판단</li> <li>○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</li> <li>○ 대책본부 통신·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</li> <li>○ 본부장·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</li> <li>○ 상황근무자 명령</li> </ul>            | <p>재난수습<br/>주관부서</p> <p>안전정책과</p>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상황보고서 작성팀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</li> <li>○ 주요인사 방문시 방문자료 작성</li> <li>○ 재난피해 정보 수집·보고</li> <li>○ 각종 여론·정보 수집, 민원 등 파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재난수습<br/>주관부서</p> <p>안전정책과</p>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행정지원팀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</li> <li>○ 상황관리 행정지원</li> <li>○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자치행정과</p> <p>안전정책과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협업 기능       | 2. 긴급 생활안전 지원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긴급생활안전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</li> <li>- 재난지역 세제, 금융, 전기·통신료, 보험료 등 감면 검토</li> </ul> </li> <li>○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</li> <li>○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</li> </ul> | <p>화명복지과</p> <p>안전정책과</p> <p>노안장애인과</p> <p>가족보호과</p> |
|             | 3. 재난현장 환경정비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</li> <li>○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4. 긴급통신 지원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</li> <li>○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</li> <li>○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통신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5. 시설 응급복구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6. 에너지 기능복구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생활 불편시설(가스, 전기, 유류 등) 피해상황 파악</li> <li>○ 가스, 전기,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경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7. 재난수습 홍보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</li> <li>○ 재난 예보·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</li> <li>○ 보도사항,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·전파</li> <li>○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홍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8.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</li> <li>○ 장비·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9. 교통대책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 두절구간(도로, 해상, 항공) 실태 파악 보고</li> <li>○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통과<br>도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10. 의료·방역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</li> <li>○ 방역·제독 및 기동방역·제독반 편성·운영(이동초소 등)</li> <li>○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행정과<br>건강증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11. 자원봉사 관리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</li> <li>○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</li> <li>○ 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치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12. 사회질서 유지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현장 출입통제, 주민대피, 범죄예방 사전조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성동부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13. 수색, 구조·구급 지원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립자의 구조,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, 안치</li> <li>○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·운영 지도·확인</li> <li>○ 군부대와 구조·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</li> <li>○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오산소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표 8]

**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**(제16조 제2항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 정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피해지원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사회재난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비상단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재난으로 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도비와 시비 부담률                      | ○ 「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0조제4항에 따른 부담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                | ○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에 대한 구호금<br>1). 사망자·실종자 :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<br>2). 부상자 : 사망자·실종자 구호금의 50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<br>1) 응급구호 : 구호물 지원<br>2) 장기구호 :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주택이 전파된 경우 60일간, 주택이 반파된 경우 30일간 구호비 지원)<br>3) 생계지원금 : 정부양곡(80kg) 5가마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금액<br>4) 세입자 보조 :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              |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,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<br>가.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<br>나.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<br>다.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<br>라.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<br>마.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<br>바.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<br>※ 지원대상<br>1) 주택 및 시설물<br>2) 농림시설 및 농작물<br>3) 축사, 가축<br>4)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|
| 5. 의료·방역·방제(防除)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| 의료·방역·방제(防除)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6조제3항제3호, 제4호,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표 9]

###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(제28조 관련)

| 사무내용         | 업무내용              | 담당관 | 통제관 | 차장 | 본부장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복무관리         |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  | ○   |  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근무자 출장명령·복명       | ○   |  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현장관리관 파견          |     | ○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유관기관 파견요구         |     | ○   |    |     |
| 상황관리         | 재난상황보고 및 진파       | ○   |  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| ○   |  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|     | ○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|     | ○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재난 예보·경보발령        |     | ○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| ○   |     |    |     |
| 대책본부<br>운영상황 |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|     | ○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|     |     |    | ○   |
| 피해조사<br>및 복구 |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 |     | ○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  |     |     | ○  |     |
|              |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  |     |     |    | ○   |
| 대책본부<br>회의   | 회의소집              | ○   |     |    |     |
|              | 회의결과 통보           |     | ○   |    |     |
| 특별재난지역 등     |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    |     |     | ○  |     |
|              | 재난사태 선포 건의        |     |     |    | ○   |
|              | 특별재난지역 검토         |     |     | ○  |     |
|              |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   |     |     |    | ○   |

[별지 제1호서식]

사회재난 피해 신고서(제17조제1항 관련)

|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(앞쪽)<br>14일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|

|     |    |        |      |
|-----|----|--------|------|
| 신고인 | 성명 | 성별:남,여 | 생년월일 |
|     | 주소 |        |      |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피해<br>내용 | 피해발생위치: |
|          | 피해 시설명: |
|          | 피해 물량:  |

「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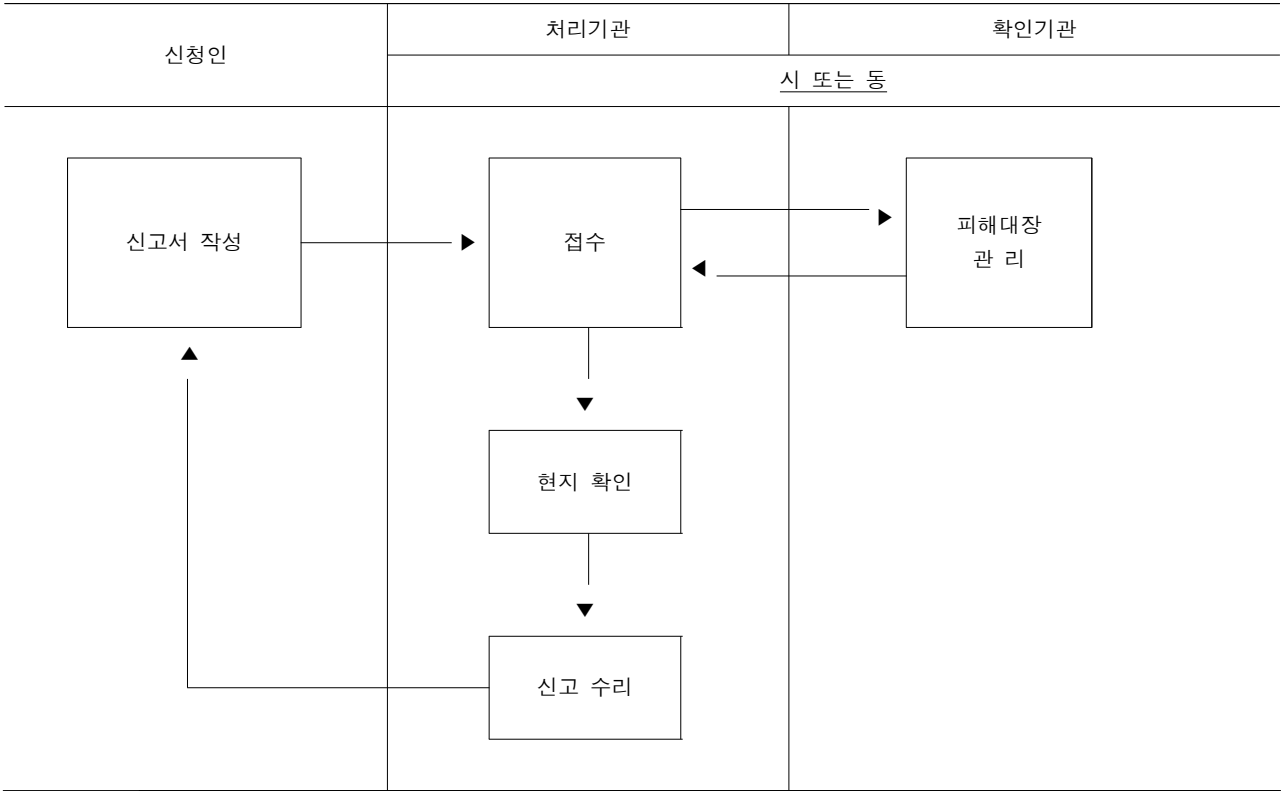
시장 또는 동장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

[별지 제2호서식]

[관리번호:           ]

## 피해 대장(제17조제2항 관련)

|                |   |    |     |
|-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|
| 확 인 자<br>(부서장) | 직 | 성명 | (인) |
| 담당팀장           | 직 | 성명 | (인) |
| 조 사 자          | 직 | 성명 | (인) |

### 1 총괄현황

| 구 분     | 공공시설/ 사유시설 |
|---------|------------|
| 피 해 위 치 |            |
| 피 해 일 시 | 년 월 일 시    |
| 피해시설명   |            |
| 피 해 물 량 |            |
| 피 해 액   | 천원         |

### 2 피해 · 복구내역

| 피해내역       | 복구내역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○ 피해액 산출근거 | ○ 복구비 산출근거 |

※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

3 피해현황 사진

| ① “사진설명” | ② “사진설명” |
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|
| ③ “사진설명” | ④ “사진설명” |
|          |          |